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##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3년 10월 일

#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10월 일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(인사청문회)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 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인사청문 대상 직위(안 제3조)
- 인사청문특별위원회(안 제4조)
-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회부(안 제5조 및 제6조)
- 인사청문의 기간, 방식 및 위원의 질의 등(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)
-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및 인사청문회의 공개(안 제11조 및 제12조)
- 인사청문후보자 등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(안 제13조 및 제14조)
- 주의의무 및 행정지원, 준용규정(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“제출의견 없음”
  - 2023. 10. 5.(목) ~ 10. 11.(수) /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
- 관련부서 협의 : 충청북도 예산담당관
- 비용 추계 : 붙임(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)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이 조례는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다른 조례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인사청문 대상 직위)**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47조의2제1항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직위”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.

1.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충북개발공사 사장
2.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위
  - 가. 충북연구원 원장
  - 나.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
  - 다.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
  - 라. 충북테크노파크 원장
  - 마.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
  - 바.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
  - 사.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

- 제4조(인사청문특별위원회)** ①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제3조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(이하 “인사청문후보자”라 한다)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과 충청북도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충청북도의회의원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- 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.
-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.

**제5조(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)**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직업 · 학력 · 경력에 관한 사항
2.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병역 신고사항
3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

4. 최근 5년간의 소득세·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
5.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
6.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사항

**제6조(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)** 의장은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

**제7조(인사청문의 기간)** ①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.  
②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.  
③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은 인사청문후보자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.  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.  
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인사청문의 방식)**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.

- 제10조(위원의 질의 등)**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(冒頭)발언을 청취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. “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.”
- ③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, 위원의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증인·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·진술이 필요한 경우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은 인사청문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 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후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인사청문경과보고서)** ① 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인사청문회의 공개)**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군사·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
2.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3.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
4. 계속(繫屬)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
5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13조(인사청문후보자 등의 보호)**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후보자·증인·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답변 등의 거부)** ① 인사청문후보자는 군사·외교·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

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.

② 인사청문후보자는 「형사소송법」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사청문후보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주의의무)**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.

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**제16조(행정지원)**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.

**제17조(준용규정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충청북도 의회 기본 조례」, 「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,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령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47조의2(인사청문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
  2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
  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
  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기관장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  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 【지방공기업법】

제49조(설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 및 특별자치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행정안전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③ ~ ④ (생략)

## 【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】

제2조(적용 대상 등)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(이하 “출자·출연 기관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,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(이하 “지방공기업”이라 한다)
    - 가. ~ 다. (생략)
 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
  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
  4. 「민법」에 따른 사단법인
- ③ ~ ⑤ (생략)

## 【형사소송법】

제148조(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)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(刑事訴追)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
2. 법정대리인, 후견감독인

제149조(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) 변호사, 변리사, 공증인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대서업자,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약사, 약종상, 조산사, 간호사,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. 단,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## 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  - 가. (생략)
  - 나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
  - 다. ~ 바. (생략)
2. ~ 3. (생략)
4. “이해충돌”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.
5. (생략)
6. “사적이해관계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- 가.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- 나.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· 대표자 ·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- 다.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·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
- 라. 공직자로 채용 ·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
- 마. 공직자로 채용 ·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·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
- 바.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· 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- 사.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
- 아.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## 7. (생략)

**제5조(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· 기피 신청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(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.

## 1. ~ 14. (생략)

15.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, 의안 · 청원 심사, 국정감사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, 국정조사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

## 16. (생략)

## ② ~ ⑤ (생략)

## **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(제11조제4항 관련)**

### **○ 첨부제외 관련규정**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### **○ 사 유**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의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의 운영 및 절차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

### **○ 작성자**

- 충청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실 입법정책팀장 이재순(043-220-5161)